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4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 홍기원 · 김태년 · 한민수

윤종군ㆍ허 영ㆍ윤준병

박지원 · 강훈식 · 이정문

송옥주 · 이연희 · 민형배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 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은 국군의 의무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의무가 명확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명령의 발령이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에 군인이 임무 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발령하거나 임무를 수행할때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

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헌법과 군 관계 법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제4조(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		
	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u>②</u> ~ <u>④</u> (생 략)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34조의2(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작전 등 임무		
	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헌법과 군 관계 법		
	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과 법		
	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